

統一情勢分析 2004-16

미 의회 '북한인권법': 의미와 전망

2004. 8

김수암(기획조정실 연구위원)

이금순(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)

통 일 연 구 원

<요 약>

1. 상정과정

- 2003년 11월 상·하 양원에서 ‘2003 북한자유법’(North Korean Freedom Act)을 상정했음.
- 2004년 3월 23일 미 하원에서 북한자유법안을 대폭 수정·보완하여 ‘북한인권법안’을 상정하였는바, 7월 21일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실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황임.

2. 주요 내용

<제1장: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 조치>

- 북한 및 동북아 관련 당사자와의 협상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주요 요소(key element)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임.
- 북한 내 인권, 민주주의, 법치,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함.
- 라디오 방송지원의 증대를 통한 북한 내 정보의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방송시간을 현 수준에서 하루 12시간으로 확대함.

○북한주민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라디오와 같은 기구를 북한에 반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2백만 달러를 지원함.

<제2장: 궁핍상태의 북한주민 지원 조치>

○NGO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군사전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공함.

○북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국가 전체에 두루 분배·제공, 모니터링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금지함.

○북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인도적 지원은 기본 인권 존중의 실질적 진전, 이산가족 상봉, 납치문제 해결, 수용캠프시스템 개혁,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허용될 때까지 금지함.

○북한난민, 탈북자, 고아, 인신매매로 희생당하고 있는 탈북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지원함.

<탈북난민의 보호조치>

○국무장관은 법제정 후 120일 이내에 북한난민의 상황을 기술하고 미국의 탈북자 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

○북한주민이 미국에서 난민이나 임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, 대한민국 헌법 하에 향유하는 법적 권리 때문에 미국으로의 난

민신청, 임시망명 적격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함.

3. 정책적 고려사항

- 북한인권법안의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되, 북한인권 법안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함.
- 인권사안에 대한 한·미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체제를 강화함.
-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대응하여 남북교류협력과 한·미공조를 병행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방향 정립과 홍보가 필요함.
-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인권관심을 표명함.

- 목 차 -

I. 문제제기	1
II. 북한인권법 상정과정 및 주요 내용	2
1. 상정과정	2
2. '2004 북한인권법안' 주요 내용	3
III. 정책적 고려사항	14
1.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감정적 대응 자제	14
2. 인권사안에 대한 한·미 간 대화 활성화 및 국제협력 체제 강화 ...	14
3. 북한인권법안 통과(확정)시 대응방안 마련	15
4.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인권관심 표명	15

I. 문제제기

-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9·11테러를 겪으면서 미국 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 - 미 의회에서는 북한인권 및 탈북자 관련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.
 - 부시대통령, 볼튼 차관보, 허버드 주한 미대사 등 미국 관료들이 꾸준히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여 왔음.
 - 켈리 대표는 1차 6자회담에서 핵문제를 포함한 미사일, 재래식 무기, 인권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관계개선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.
 - 북한인권을 전문활동 영역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되는 등 민간 차원에서 대북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.

- 2004년 7월 21일 미 하원에서 ‘2004 북한인권법’(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)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.
 -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가 끝나게 되면 북한인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.
 - 북한인권법은 한국 내 여론과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,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.

-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, 북한인권법안이 확정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.

II. 북한인권법 상정과정 및 주요 내용

1. 상정과정

-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2002년 10월 16일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‘2002 북한난민구호법’(The North Korean Refugee Relief Act of 2002)을 제출하였음.
 - 한국정부의 반발을 우려한 미 국무부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3년 6월 25일 브라운백 의원이 재상정하여 7월 9일 수정안의 형태로 미 상·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음.
 - 북한난민의 미국 내 입국절차 간소화라는 단일목적만 갖고 있는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북한인권과 탈북자 관련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됨.

- 2003년 6월 26일 허드슨 연구소와 디펜스포럼,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(Concerned Women for America, CWA) 등 13개 종교·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및 민주주의의 향상을 목표로 북한자유연합(North Korea Freedom Coalition, NKFC)을 결성하였음.
 - 동 연합은 2003년 7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‘북한자유법안’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함.

- 상원에서는 2003년 11월 20일 샘 브라운백(공화, 캔자스) 동아태 소위 원장과 에반 베이(민주, 인디애나) 의원이 주도하여 ‘2003 북한자유법’(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)을 상정했음.
 - 하원에서도 2003년 11월 22일 짐 리치(공화, 아이오와)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등이 주도하여 ‘2003 북한자유법’(North

Korean Freedom Act)을 상정했음.

- 상·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은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 위츠가 초안 작성을 주도하였으며, 북한자유연합이 상정을 목표로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었음.

○북한자유법안은 검토과정에서 미국 내 행정부처, 관련국과의 갈등, 법안 자체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음.

○2004년 3월 23일 짐 리치(공화 아이오와주)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주도, 16명의 의원이 북한자유법안을 대폭 수정·보완하여 ‘북한인권법안’을 상정하였음.

- 2004년 3월 31일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통과

○법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7월 21일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실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황임.

2. ‘2004 북한인권법안’ 주요 내용

가. 북한인권법안의 내용

○북한인권법안은 검토과정에서 2단계를 거쳐 이해당사자의 이해조율을 거쳤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.

- 북한자유법안, 3월 23일 상정된 북한인권법 초안, 7월에 통과된 최종 법안의 내용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<북한자유법안과의 비교>

-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에 따라 ‘북한인권법’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대폭 수정·보완 되었음.
- 법안의 명칭이 북한자유법안에 비해 보다 중립적인 표현인 북한인권법안으로 변경 되었음.
- 북한인권과 무관한 대량살상무기가 포함되어 본질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항이 삭제 되었음.
- 미국의 대북협상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에 따라 미국, 북한, 동북아 관련 당사자간 교섭 시 북한인권을 ‘주요 요소’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수준으로 축소 되었음.
 - “북한이 완전한 경제개혁을 이루기 전까지는 대북 무역제재 해제 및 경제원조 제공을 할 수 없다”는 조항이 삭제됨.
 - 대북협상 시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, 대량살상무기 정보센터, 대량살상무기 정보 제공자 관련 조항 등이 삭제되었음.

<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>

- 법안의 목적
 - 북한 내 기본인권의 존중과 보호·증진
 - 북한난민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적 해법의 모색

-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, 접근성, 투명성의 강화
- 북한내부, 외부로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촉진
- 민주적 정부체제로의 한반도 평화 통일의 진전

○7월에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의 본문은 3월 법안상정 시의 초안에 비해 5개항이 축소된 3개장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(북한자유법 5개장 26개 조항, 상원안은 24개 조항).

- 제1장: 북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(5개 조항)
- 제2장: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 조치(3개 조항)
- 제3장: 북한난민의 보호조치(5개 조항)

* 삭제된 5개조항은 모두 북한난민보호 관련 조치로서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하였을 때 난민지위, 우선망명정책의 추진, 신분변경(우선 2순위 그룹), 임시보호지위, 노동허가권 등 탈북자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조항임.

<제1장: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 조치>

○북한 및 동북아 관련 당사자와의 협상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주요 요소(key element)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임.

○북한 내 인권, 민주주의, 법치,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함.

○라디오 방송지원의 증대를 통한 북한 내 정보의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현 수준에서 하루 12시간으로 방송시간을 확대함.

- 미국방송위원회는 법 제정 후 1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함.

- 북한주민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라디오와 같은 기구를 북한에 반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매년 2백만 달러를 지원함.
 - 국무성은 법제정 후 1년 이내에 의회에 기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3년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함.

- 북한 내 인권증진을 위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 따른 북한인권담당 특별보고관의 임명과 실무그룹,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북한에 대한 특별 관심을 촉구함.

<제2장: 궁핍상태의 북한주민 지원 조치>

- NGO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군사전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함.
 - 현 수준보다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, 모니터링, 접근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조건으로 해야 함.
 - 타국가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 북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전달보다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투명한 채널을 통하도록 촉구함.
 - *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삭제되었음.
 - * 대신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강화, 정부간 원조의 북한 내 인권상황과의 엄격한 연계 등을 명문화하였음.
- 국제개발처는 법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,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과 모니터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
 - 이후 2년간 매년 제출함.

- 북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국가 전체에 두루 분배·제공, 모니터링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금지하며,
 - 정치적 보상이나 강압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됨.
- 북한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인도적 지원은 기본인권 존중의 실질적 진전, 이산가족 상봉, 납치문제 해결, 수용캠프시스템 개혁,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허용될 때까지 금지함.
- 북한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벗어난 북한난민, 탈북자, 고아, 인신매매로 희생당하고 있는 탈북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지원함.
 - * 법안 심사과정에서 초안에 있던 난민지위, 임시보호 등을 요청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, 인신매매의 희생에 당하고 있는 탈북여성에 대한 법적 지원부분을 삭제하였음.

<제3장: 탈북난민의 보호조치>

- 국무장관은 법제정 후 120일 이내에 북한난민의 상황을 기술하고 미국의 탈북자 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
 - 난민상황의 기술은 비기밀, 미국의 정책은 기밀형태로 발간함
 - * 법안 심사과정에서 초안에 없던 보고서 형식이 추가되었는바,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.
 - * 또한 미국의 정책을 기술하면서 난민(refugee) 혹은 귀순자(defector)라는 용어 대신 ‘북한을 벗어난 북한국민’(North Korean nationals

outside of North Korea)으로 완화된 표현을 사용함.

○북한주민이 미국에서 난민이나 임시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하에 향유하는 법적 권리 때문에 미국으로의 난민신청, 임시망명 적격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함.

- * 탈북자들이 미국에 입국 시 부여되었던 특혜조항이 삭제되었음.
- * 대한민국 헌법과 탈북자의 미국 입국 적격성, 탈북자들의 난민신청 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폭 축소되었음.
- * 특히 법안 심사과정에서 북한난민보호 관련 조치 5개 조항이 전부 삭제되었는바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북한당국에 의해 박해 받는 북한주민을 특별한 인도적 관심을 갖는 우선 2순위 그룹으로 지정함.
 - 북한으로의 귀환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북한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인에 대한 정책을 모델로 ‘우선 임시망명정책’(first asylum policy)을 국제협정으로 추진함.
 - 북한난민이 미국 난민프로그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박해를 받은 희생자로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(humanitarian parole)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함.
 - 임시입국 허가가 부여된 지 18개월 이내이며,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정부에 협력하는 자로 결정할 경우 신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.
 - 국토안보부가 인권과 인신매매 기록이 개선되었다고 결정하고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을 해제할 때까지 북한으로 귀환할 수 없는 특별하고 임시적인 조건이 존재하므로 주변국들도 임시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외교수단을 사용함.

- 미국 내 탈북난민 신청인들이 노동허가(right to accept employment)를 받을 수 있도록 함.
- UNHCR과 관련하여 중국 내 북한주민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접근을 제공할 중국의 의무에 주목함.
 - UNHCR 기부국들로 하여금 중국정부에 대해 UNHCR의 접근허용을 촉구함.
 - UNHCR로 하여금 중국 내 북한인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재권을 주장하도록 촉구함.
- 법제정 후 1년 이내, 그리고 이후 5년간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안의 규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북한주민의 상황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

나. 법안의 영향

<대북 및 대주변국 관계>

- 대량살상무기 관련 조항이 제외되고 북한 내 민주주의 촉진을 위한 조항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촉진과 대북지원을 규제하고 탈북자를 수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대북관계를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.
 - 특히 북한내부로 정보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북한으로서는 압박으로 느끼고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음.
- 북한에서는 마이클 호로위츠의 언급을 계기로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

북한인권법안에 대해 ‘공화국에 대한 이른바 <붕괴촉진법안>’으로 규정하고 있음.

- 반공화국방송을 통한 《자유민주주의》 선전과 모략적인 국제적 고립과 압살이 법안의 주된 의도라고 인식하고 있음.
-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킨 방법으로 공화국을 붕괴시키려 책동하고 있다는 것임.

○대북협상에서 북한인권문제를 핵심요소로 설정하는 동시에 탈북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주변국이 취하도록 미국이 외교수단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조율이 필요하게 될 것임.

- UNHCR로 하여금 중국정부에 대한 중재권을 확보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, 탈북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할 것임.

○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또는 정부간 원조를 북한 내 인권상황과 엄격히 연계시키고 분배의 투명성과 모니터링,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지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.

<한미관계 및 남한 내부>

○북한주민들은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한·미 간 조율이 필요함.

○국내논쟁이 가열되어 대북, 대미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.

- 열린우리당에서는 북한통과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대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의 성명서 채택을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.
 -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경협은 확대하되,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함.

-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, 좋은 벗들,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입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.
 -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한 인권개선이라는 법안의 기본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임.
 - 반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함.

<미 행정부 조치사항>

- 현재까지 미 행정부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(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) 등 일반적인 틀 속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, 북한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.
 - 그러나 의회에 상정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자외교에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음.

- 북한자유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행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, 먼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

보고서 주제	해당부처	기한	비고
대북라디오 방송	방송위원회	법제정 후 120일 이내	일반보고서
대북 라디오 제공	국무성	법제정 후 1년 이내, 이후 3년간 매년 제출	기밀보고서
대북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	국제개발처(USAID)	법제정후 180일 이내 이후 2년간 매년	일반보고서
탈북자의 상황과 미국의 탈북자 정책	국무성	법 제정 후 120일 이내	일반보고서
법 규정에 따른 탈북자 입국 수	국무성, 국토안보부	법제정 후 1년 이내 이후 5년간 매년	

○ 행정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함.

목적	기간	예산	비고
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	2005-2008년(매년)	800만 달러 (매년 200만 달러)	
대북 라디오 보급 프로그램	2005-2008년(매년)	800만 달러 (매년 200만 달러)	
탈북자 지원	2005-2008년(매년)	8,000만 달러 (매년 2,000만 달러)	

* 매년 2,400만 달러 예산 책정

다. 향후 전망

-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상원과의 조정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음.
- 현재 상원에는 지난 해 제출된 북한자유법안이 계류 중인바, 상·하 양원 간 법안의 조율이 필요함.
- 북한인권법안을 주도한 짐 리치 하원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9월중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함.
 - 상원을 통과할 경우 부시대통령의 대북관을 고려할 때 서명할 것으로 판단됨.
- 반면 8월 1달간 휴회 후 9월에 개최되지만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.

Ⅲ. 정책적 고려사항

1.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감정적 대응 자제

- 북한인권법안의 조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 대응책을 수립하되, 미국의 북한인권거론을 ‘내정간섭’ 혹은 ‘남북관계 악화’라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음.
 - 정부차원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,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논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미국이 인권문제를 북한정권 붕괴수단으로 활용 시 예상되는 현실적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함.
 - 북한인권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 및 민간단체 간의 토론을 활성화함.

2. 인권사안에 대한 한·미 간 대화 활성화 및 국제협력 체제 강화

- 우리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것인바, 미국, 유럽연합 등과의 양자대화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최근 우리사회의 반미정서 등으로 인해 한·미 간 갈등이 증폭되어 왔으며, 미국은 우리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음.
 -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공유가 전제되어야 함.
 -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, 최근 변화양상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.

- 한·미 간 주요 관심사안의 차이를 인식하고, 이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대화창구를 활성화함.
- 정부차원에서 문제제기가 곤란할 경우 NGO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.

3. 북한인권법안 통과(확정)시 대응방안 마련

- 남북교류협력과 한미공조를 병행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방향 정립과 홍보가 필요함.
 -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 제출, 대북방송 확대 등 법안 시행 시 인권 문제제기를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반발로 인해 북·미 간 첨예한 갈등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며,
 - 이로 인해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체제보장과 연계되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음.
 - 인권문제로 인해 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구하고, 이후에 주요 의제로 제기하도록 긴밀하게 협의함.

4.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인권관심 표명

- 당국간 대화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, 국제사회의 입장을 설명
 - 이산가족 및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해결노력이 남북당국간의 인권개선 사안임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수 있다는 논리 활용
 - 대북 인도적 지원 시 어린이,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인권연계 및 투명성 강화